

신해양법과 어항의 중요성

“漁港건설은 領海를 넓힌다”

韓 相 復 / 國立水產振興院 海洋科長 · 理學博士

신해양법은 국제연합해양법협약을 말한다. 이 국제법은 1994년 11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했고,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12월 1일 국회의 비준이 끝났다.

이제 어항은 어촌의 종합개발 핵심체가 되면서 EEZ(배타적 경제수역) 전진기지 역할이 추가되고 있으며, 곳에 따라서는 우리 영해를 넓히는 훌륭한 수단이 되고 있다.

해양법 협약 제11조에 명시

어항을 건설하려면 우선 방파제를 쌓아야 한다. 환하게 트인 바다쪽으로 방파제를 100m 축조하면 우리의 영해가 100m 확대된다. 1,000m로 연장되면 영해도 1,000m 확대되는 것이다.

영해는 해안선에서 밖으로

“

신해양법시대의 어항인은 이제부터 더크고 무거운 사명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나라 최외곽에 외로이 있는 섬들 중 전혀 사람이 살 수 없는 바위섬을 제외하고 어항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외곽 도서에서의 어항건설은 영해의 확장이고 또 EEZ의 확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어항인 모두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사명에 가슴이 벅찬 흥분함을 가지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

12해리(22.2km)까지 인정되도록 정해졌으나 항구의 방파제는 해안의 일부로 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의 항구는 어항이기 마련이다. 인공도서는 영해의 기선이 될 수 없다는 조건에 비해서 이것은 효과적으로 영해를 넓히는 첩경이다.

풍요로운 어촌 건설을 하면서 또 영해도 넓히는 결과를 가져오는 근거는 바로 해양법협약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다.

즉 「영해의 경계를 확정함에 있어서 항만과 불가분의 일부인 최외곽의 항구적 항만 시설은 해안의 일부로 본다. 해안에서 떨어진 설비 및 인공도서는 항구적 항만시설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이 바로 신해양법이다.

이 규약은 방파제의 바깥쪽이 영해의 기점이 된다는

것을 뚜렷이 나타내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안, 울릉도, 제주도 등에 있는 어항 중 주변에 바위가 없고 오목히 들어가 앉지 않은 곳에서 이런 일이 나타난다.

어항은 EEZ의 전진기지이다.

우리는 이미 1971년부터 외딴 섬의 어항을 제3종 어항으로 지정해서 집중적인 시설투자를 해 오고 있다.

비록 인구가 적어 어항건설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는 곳에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어려움을 무릅쓰고 꾸준히 어항을 건설하여, 이제는 아주 훌륭한 EEZ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EEZ는 영해의 기점에서 200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 인접국이나 서로 마주보고 있는 나라에서 EEZ가 겹치게 될 경우 중간선을 택하는 방법이 통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동해안과 울릉도, 제주도 등에서는 어항의 최외곽 방파제가 EEZ의 기점이 되니, 이것은 영해도 넓혀주고 EEZ도 넓혀준다. 이런 곳에서 이용하는 기선을 통상기선이라고 한다.

해안선의 굴곡이 심한 곳

이나 해안에 근접하여 섬들이 많이 있을 때는 통상기선의 사용이 어려워진다.

이럴 경우 해안선의 일반적인 방향과 비슷하게 최외곽 도서를 연결해 나가는 직선기선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해양법협약 제7조에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남해안과 서해안 근처의 다도해에서 이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EEZ기선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 유인도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고 제121조 3항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위로 된 섬은 영해의 기점은 되어도 EEZ 기점이 되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바위덩어리인 독섬은 바로 무인도를 의미한다.

간단히 말하면 무인도는 영해는 가져도 배타적경제수역은 갖지 못한다는 말이 된다.

우리나라 영해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직선기선을 설정하는 섬들은 부산 영도 남쪽 4km에 위치한 생도(生島), 홍도(鴻島), 간여암, 상백도, 거문도, 여서도, 장수

도, 절명서, 소흑산도, 홍도(紅島), 횡도, 상왕등도, 직도, 어청도, 서격열비도, 소령도 등이 있다.

이들 중 제주해협에 있는 여서도, 장수도, 절명서는 EEZ 설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이들을 제외시키는 대신, 통상기선을 사용하고 있는 곳에서의 섬인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 등을 추가해서 EEZ와 관련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생도

부산시 영도 남단에서 남쪽 4km에 있는 바위덩어리로 높이가 53m이다. 이 섬은 영해기선은 되지만 EEZ기선은 되지 못하기에 EEZ기선은 4km 후퇴해야 한다.

(2) 홍도(鴻島)

1992년에 제3종 어항으로 지정된 매물도항에서 남동쪽 18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정상에 홍도등대가 있어서 항로표지원 2명이 상주하고 천연기념물 제335호인 꿩이 갈매기 번식처로 유명하다. EEZ 기점이 되기에는 아직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경우 매물도항이 중요한 전

진기지 역할을 해야한다. 그리고 매물도 남서쪽 15km에 위치한 유인도인 국도(國島)에도 어항시설을 하여 전진기지 역할을 분담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3) 간여암

소리도 남단에서 남남동쪽 14km에 위치하는 바위로 높이가 22m이다. 간여암은 EEZ 기점이 전혀 될 수 없으니 유인도인 소리도의 가치가 커질 수 밖에 없으며,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에 있는 매물도와 국도등의 중요성도 부각된다. 소리도 바로 북쪽에 제3종 어항으로 안도항이 있다. 소리도와 안도는 행정구역상 전남 여천군 남면에 속한다.

(4) 상백도

거문도 동쪽 25km에 위치하며 바위로 된 섬이다. 일반적으로 백도(白島)라고 칭하는 33개의 바위섬 중에서 최외곽에 있으며 EEZ 기선이 되지 못하므로 거문도의 지리적 중요성이 부각된다. 거문도항은 해운항만청에서 관리하는 연안항이지만 남해의 어업전진기지로써도 대단

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5) 제주도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으로 행정구역상 하나의 도(道)를 형성한다. 행정구역의 제주도 관내의 모든 섬들은 다도해 영역에 포함되지 못하므로, 영해 기점이 통상기선이기때문에 어항의 방파제도 영해를 넓히는데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EEZ 설정에는 제주도의 동부 남부 서부가 중요하다.

우도(牛島)는 제주도의 동단인 성산반도 북동쪽 4km에 있으며 우도항이 제2종 어항인데 이곳을 제3종어항으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위미항은 1985년 제1종어항으로 지정되어 제주도 남동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국토의 최남단에 있는 마라도는 유인도이면서 간단한 선착장이 있을 뿐이며 가파도에 제2종어항인 가파항이 있을 뿐이다. 마라도에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구과학조사및 연구시설을 갖추고 이들을 지원할 항만시설이 요구된다.

제주도 서쪽에 있는 차귀도와 비양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항구시설이 훌륭하게 되어 있어서 영토의 최외곽지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6) 소흑산도

행정구역이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이고 제3종 어항이 있다. 가거도(可居島)라고도 하는 어업전진기지로 금년에도 64억 여원을 들여 거점어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남서해역에서 소흑산도가 차지하는 지리적 이점은 엄청나다.

(7) 흥도

대흑산도 서쪽 18km에 위치하며 제2종어항이다. 빼어난 절경으로 중요한 해양관광지로 잘 알려져 있으면서도 항구시설은 빈약하다. 행정구역으로는 전남 신안군 흑산면 흥도리이다.

(8) 횡도

법성포 서쪽 38km에 위치한 안마군도 중 최외곽에 있

는 섬으로 안마도등대가 있고 주민도 3가구가 사는 곳이다. 지근에 제3종어항으로 안마항이 1985년 지정되어 있으며 행정구역으로는 전남 영광군 낙월면에 속한다.

(9) 상왕등도

전북 부안군 위도의 북서쪽 12km에 위치하며 정상에 등대가 있고 주민이 10여가구 살고 있으나 항구시설은 빈약하다. 1972년부터 제2종어항이기는 하나, 이곳도 거점어항으로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10) 직도

고군산군도의 최외곽에 있는 바위로 된 섬으로 EEZ 기점이 못된다. 인근의 유인도로는 동쪽 21km에 제1종어항인 말도항이 있다.

(11) 어청도

군산시 옥도면에 속하며 제3종어항으로 1971년 지정되었고 금년에도 50억원이 투자되어 계속적으로 어항이 확장되고 있는 중이다. 지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점어항이다.

(12) 서격열비도

충남 서산군의 관장각에서 서쪽으로 50km까지 줄지어 있는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격열비열도의 최외곽도서로 무인도이다. 여기서 2km떨어진 북격열비도에는 등대시설이 있고 동백나무가 자생하긴 하지만 현재로선 개발의 여지만 남겨놓고 있을 뿐이다. 격열비도는 EEZ 설정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등대가 무인 등대로 되기전에는 항로표지원들이 상주하고 있었던 곳이므로 적극적인 개발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13) 소령도

덕적군도의 최외곽도서로 높이 32m되는 바위섬이라서 EEZ 기점은 못된다. 이 섬의 북서쪽 20km에 울도와 백아도가 있다. 울도항은 1991년 제3종어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진행중이며, 백아도항은 제2종어항이다. 이들은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에 속한다.

(14) 울릉도

경북 울진읍 죽변리의 용

추갑에서 132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해안선 길이가 42km이고 인구가 약 1만 5천명이나 된다. 여기서는 통상기선이 적용되고 현포항과 저동항이 제3종어항으로 1971년 지정되었다. 그리고 천부, 태하, 통구미, 남양등은 제2종어항이다. 동쪽 2km에 죽도가 있는데 대나무가 많고 농토가 있어서 3가구의 주민이 사는 유인도다. 울릉도는 동해에서 우리의 EEZ 해역을 넓혀주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현포항에 50억원을 계속 투자하고, 저동항에 22억원을 들여 정비확장에 힘쓰고 있을 정도로 정부지원이 각별하다.

(15) 독도

울릉도 남동쪽 90km에 위치한 독섬이 바로 독도이다. 독도가 우리의 영토이고 12해리의 영해를 가지고 있으며 1953년부터 인공적이지만 계속적인 거주를 해 오고 있으나 자연적으로는 무인도인 암석에 해당하여 EEZ 기선이 원칙적으로는 될 수 없다. 독도에 출입하는 선박을 위한 안전 접안시설을 공사중에 있다.

배타적경제수역(EEZ)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15개의 최외곽 도서들을 종합해 보면, 생도 홍도(경남) 간여암 상백도 직도 서격열비도 소령도 등은 바위섬이기에 가까운 유인도로 그 기점이 후퇴해야 한다. 거문도 홍도(전남) 횡도 상왕등도 어청도 제주도 울릉도 등은 유인도이므로 EEZ 기점으로 신해양법시대에 그 가치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어항인의 사명

신해양법시대의 어항인은 이제부터 더크고 무거운 사명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나라 최외곽에 외로이 있는 섬들 중 전혀 사람이 살 수 없는 바위섬을 제외하고 어항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외곽 도서에서의 어항건설은 영해의 확장이고 또 EEZ의 확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어항인 모두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사명에 가슴이 벅찬 호뭇함을 가지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외딴 섬의 항구시설은 바로 어항시설이 되고, 그곳의 주민은 어민이기에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 일을 성사시켜야 한다. 물론

외딴 섬 일수록 방파제 건설에는 더욱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때로는 더욱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우리가 방파제를 100m건설하면 그만큼 영해가 확장되고 EEZ가 확장된다는 보람이 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착수해야 할 일들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에 있는 국도(國島)에 어항시설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홍도(鴻島)는 유인도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홍도가 중요한 거점이면서도 현재로는 항로표지지원만이 있기 때문에 EEZ 기선은 매물도와 국도로 후퇴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대책이 요구된다.
- ② 제주도의 우도 마라도 차귀도 비양도 등에도 보다 양질의 어항시설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③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를 제3종어항으로 집중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④ 전북 부안군 위도면에 있

는 상왕등도도 제3종어항으로 육성해야 한다.

- ⑤ 충남 태안군 근흥면 소재 가의도항을 제2종어항에서 제3종어항으로 긴급히 육성하고 아울러 격열비도의 유인도 가능성을 검토하여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북격열비도에는 오랫동안 항로표지요원이 거주해 왔던 역사적 사실이 있기에 자연적인 거주 가능성이 있을 경우 거주민을 위한 어항시설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격열비도가 무인도라고 국제적으로 판정될 때 EEZ 기선은 30해리 후퇴하여 가의도가 될 수 밖에 없다.
- ⑥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소재 백아도와 대청면의 최외곽에 있는 제2종어항들에도 정부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 ⑦ 경북 울릉군 소재 죽도에도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어항이 있어야 하므로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